

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9. .

하동군의회의장 강 회 순

1. 조례명: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,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CCTV,

비상벨 등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 결제 시스템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(안 제4조제5호)

나.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(안 제4조제6호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uu1028@korea.kr

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: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 조례 제 호

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,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

6.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

제10조 중 “**자**는”을 “**자**에게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)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5. (생략)	제4조(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)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,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</u> 6. <u>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</u> 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제10조(착한가격업소의 특례지원) 군수는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<u>자</u> 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서 연 5.5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.	제10조(착한가격업소의 특례지원) ----- <u>자에게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